

RM 2026-10-1159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과정)

2026. 4.



| 주최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주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PROGRAM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과정)

□ 일 시: 2026. 4. 30.(목) 10:00~17:30

□ 장 소: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명동(서울 중구)

□ 일 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1:00	• 등록	
11:00~11:10	• 개회 및 인사말씀	교육부 대학교육지원실장
11:10~12:10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및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방재현 책임연구원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12:10~13:00	• 중식	-
13:00~14:00	•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박혜준 센터장 (서울대학교)
14:00~15:00	•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사례	김태준 센터장 (한경국립대학교)
15:00~15:30	• 휴식	-
15:30~17:30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애학생 편의 제공	조한나 계장 (나사렛대학교)
17:30~	• 폐회	

※ 세부 프로그램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CONTENTS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과정)

- 01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및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1**
방재현 책임연구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02 |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21**
박혜준 센터장(서울대학교)
- 03 |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사례 39**
김태준 센터장(한경국립대학교)
- 04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애학생 편의 제공 63**
조한나 계장(나사렛대학교)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과정)

0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및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방재현 책임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및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방재현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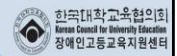
2026. 4. 30.(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목 차



-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 II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 III 질의 응답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추진 배경 및 기능



추진 배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3.4.19.시행)에 따라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지정 의무화
- [전담기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지원대상] 고등교육기관* 및 장애 대학(원)생**
 -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법 상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 ** [학생]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대학(원)생



기능

- 대학의 장애대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연구·자료개발 보급, 컨설팅 및 실태조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제2항(고등교육센터의 업무)]

- | | |
|---------------------------------|----------------------------|
| ①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 ②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
| ③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 ④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
| ⑤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 ⑥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 ⑦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2.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내용

①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교육활동 지원: 일반·전문 지원인력 인건비,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 보조기기 지원: 대학 및 개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
- 대학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 대학의 자율 희망 사업 및 대학 내 인식개선 교육 지원

②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 진로·취업 지원 유형: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통합 지원 유형: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포함 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 종합적 지원 역량 강화 등
-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발달장애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확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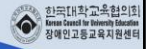
③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컨설팅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수행

④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연구 및 자료 개발 등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분석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등교육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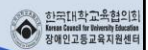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3.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사업 추진 체계 및 역할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구분	교육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원	대학 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전문 지원인력 인건비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대응투자(교비) 20% 이상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대상 지원 개인 대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자율사업 운영비 지원 ※ 2023년부터 3년 연속 교육활동 지원사업(연 1회 이상) 참여 대학 대상 대학 내 인식개선교육 지원
사업신청 및 운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별 신청 - 1학기: 2~3월, 2학기: 8~9월 선정 후 학기별 운영 - 1학기(1월 1일~8월 말) ※ 겨울·여름계절학기 포함 - 2학기(8월 말~12월 31일) ※ 별도 기본계획 안내 생략(동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회 신청(2월~3월) 선정 후 연간 운영(26년 1월 1일~12월 31일) 	
제출서류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수신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공문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www.kcue.or.kr) - 공지사항 참조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교육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일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의 교내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 지원 ※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일반교육지원인력으로 활동 가능 [재학 중인 대학생을 활용한 일반 지원은 동 사업이 아닌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지원]
전문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대학(원) 학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교정사, 화면해설사 등 전문인력 활용 지원 [시급]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만 전담하는 전문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자막 제작비, 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기 및 문자통역 등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 ※ 여러 과목을 신청하는 대학은 과목별 우선 지원 순위를 설정하여 신청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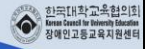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교육활동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겨울계절학기, 1학기, 여름계절학기 : 2026년 1월 1일 ~ 8월 말
 - 2학기 : 2026년 8월 말 ~ 12월 31일
- 지원기준

유형	구분	기준단가	재원		비고
			국고지원	대응투자	
일반 교육지원인력	일반 교육지원인력	[시급] 11,000원	8,800원	2,200원	국고지원 80%
	전문 교육지원인력	[시급] 32,000원	25,600원	6,400원	
	원격프로그램 운영비 [과목당]	[상한] 11,000,000원	8,800,000원	2,200,000원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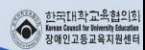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교육활동 지원

- 교육지원인력 운영 기준
 -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 [근로시간 상한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 ※ 1명의 교육지원인력이 다수의 대학에 동 사업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
 - [국고지원 한도 및 최저임금 준수] 제시된 시급 이하로만 국고지원 신청 가능하며, 최저임금 준수 필수
 - 제시된 시급 이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교비 대응투자로 충당
 - [전담인력, 시급 적용] 고유 업무 외 다른 업무 겸직 시 국고 지원 불가
-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는 실비 기준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수강 신청 정보, 수강 필수과목 여부, 학생의 지원 신청 내역 등을 기반으로 해당 견적을 받아 신청
 - ※ 수강신청 정보, 지원 신청 내역, 견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필수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교육활동 지원

- 사전교육 운영 기준
 - 사전교육 실시
 - 교육지원인력 당 연1회 이상 사전교육(120분 이상) 의무 실시
 - 기본교육(장애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현장실습형(장애체험 등) 교육 병행
 - ※ 서류 대체 및 40분 이내 단기교육은 사전교육 시간 불인정, 개인 봉사활동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교육은 지급 제외
 - ※ 사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인식개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인력의 사전교육비(활동비) 지급은 최대 2시간까지 교육지원인력 인건비*로 지원 가능
 - * 비용집행 시 활동보고서 상 지급 근거 마련(인정시간 작성) 필수, 이수 증빙자료는 대학 보관
 - 활동보고서 작성
 - 교육지원인력 활동 내역 확인·점검을 위한 보고서 관리
 - ※ 공고문에 제시된 양식 [대학보관자료: 교육지원인력 활동 보고서] 필수 사용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교육활동 지원

- 교육지원인력 세부 유형 및 지원 내용

영역	내용
학습 지원	•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에 실시간 문자 또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인력
	• 수강신청, 강의 대필, 각종 평가 대필 등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인력
	• 장애학생의 수업에 함께 들어가 실험, 실습, 강의참여 등 수업보조 [예] 지체장애학생-실험, 실습 보조, 시각장애학생- 발표 및 과제 수행 보조, 기타 수업보조가 필요한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인력 등
	• 도서관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교육지원인력 [예] 도서관에서 자료 수집 및 열람 지원
편의 지원	• 수어 및 문자통역, 점역 지원 등의 역할 수행(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수업 이동, 학사(기숙사) 및 기타시설 이동을 도와주는 교육지원인력
	• 장애학생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교육지원인력 [예] 물품정리, 식사, 신변처리 등
	• 장애학생의 학교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도와주는 교육지원인력 [예] 교내 취업특강, 교내 특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시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인력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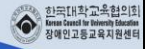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보조기기 지원

- 지원 내용 및 기준

영역	대학 대상	개인 대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다수에 의한 공동 이용 또는 비특정 개인 대상으로 단기 대여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대학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 * 수업 지원용, 이동 지원용, 장애학생 전용 학습공간 비치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장애학생 개인 대상으로 졸업 시(또는 학적변동 시) 까지 안정적 장기 이용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대학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당] 최대 15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당) 최대 6백만원, 학교당 최대 3명까지 ※ 단일 품목의 단가가 국고지원 최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단가까지 1개 수량 한정 신청 가능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장애학생 현황 및 보조기기 구비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보조기기 운영비는 보조기기 사업비 신청액의 15% 이내에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대학 간 상호 협의하여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기기 구매를 주관할 대학(이하 주관 대학)을 선정하고 주관 대학을 통해 일괄 신청 가능 • 대학별 장애학생 신청 및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구비한 보조기기의 수리·보수 비용(소모품 구입비는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장애 또는 2가지 이상의 중복 장애를 가진 경우, 타 부처, 민간단체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원활히 구비할 수 없는 경우 등 복합적으로 고려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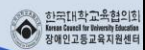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지원 가능 및 지원 불가 품목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 가능
[예: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라벨러, 점자프린터, 탁상용 확대독서기, 태블릿확대기 등]
 - 장애유형별 특성과 직접 관련성 없는 일반 기기 지원 불가 [예: 노트북, 태블릿 등]
 - 필요 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수행기관, 교육부 협의 통해 결정
- 보조기기 활용도 제고
 - 대학은 보조기기 구입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학기초부터 학생이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국고 지원을 통해 구비한 보조기기는 다른 대학과 공유 사용 가능
 - 보조기기 관리대장 활용하여 보조기기 관리 및 대여 현황을 철저히 관리
- e나라도움 예산집행 관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된 예치형 사업비를 실집행 전 대학 자체 통장으로 이체 불가하며,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 e나라도움 카드 등 지출 증빙을 활용하여 e나라도움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함.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대학 자율사업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지원 내용
 - '23년부터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계속(연 1회 이상) 참여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대학별 사업 제안)하여 사업계획서 심사(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
 - ※ 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설 공사비, 장비 구입비,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기준

구분	국고지원	대응투자	비고
대학 자율사업 지원	[학교당] 최저 3백만원 ~ 최대 15백만원	없음 [자율]	국고지원 100%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인식개선교육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 대상 사전교육 및 홍보, 장애 및 비장애학생·교직원 등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 관련 소요 경비* 지원
 - * 대학 차원의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보조기기 지원 운영 개선을 위한 소요경비 포함
- 지원기준

구분 \ 유형	국고지원	대응투자	비고
인식개선교육 지원	[학교당] 정액 1백만원	없음(자율)	국고지원 100%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5.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사업개요

구분	진로·취업 지원 유형	통합 지원 유형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12개월]		
지원예산	▪ 총 840백만원		
지원내용	▪ 9교 선정 ▪ 교당 50백만원 지원	▪ 2025년 선정 대학 중 3교 선정 ▪ 교당 78백만원 지원	▪ 2교 선정 ▪ 교당 78백만원 지원
주요사항	▪ 맞춤형 진로설계 및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협의회 운영 등	▪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으로서 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대상 진로·취업 및 교육활동 지원 등	▪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제출서류 및 방법	▪ 전자문서(수신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공문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www.kcue.or.kr)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 공지사항 참조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5.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주요
내용

-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진로·취업교육 규모화·효율화 추진 및 성과 확대
- 장애인고용공단, 지역 산업체, 지자체 등과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취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
- 관련 협의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권역 내 대학 참여 활성화 및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기회 확대

진로·취업 지원 유형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취업 캠프, 채용 박람회, 멘토-멘티 프로그램, 온라인 특강 등 학생 수요와 만족도 고려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진로설계 지원)
장애학생 개인의 적성·소질에 따른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여 진로·취업지원 효과성 제고
- (취업 역량 강화 지원)
현장 직무역량 및 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해 현실 적합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취업 역량 향상 지원

통합 지원 유형

- (통합 지원 대학의 역할 정립)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으로서 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부터 교육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발달장애 학생 지원 확대)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 및 확산 추진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5.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의 역할

구분	진로·취업 지원 유형	통합 지원 유형
1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유형	· 권역 내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권역 및 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박람회 등 운영
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구비 및 타 대학 필요 시 보조기기 지원 · 공통 과목 등 교육자료 공동 개발·배포
3 권역 내 대학 멘토 지원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운영 ·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또는 대학 대상 '장애학생 지원' 관련 멘토 역할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지원 · 전국 단위 교육지원인력 풀 관리
4 협력 강화	· 통합형 대학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협조 및 지원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장애학생 지원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등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5.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 선정 절차



- 선정 조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
 전담인력 인건비 일정 부분 지원 가능 대학(*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선정 평가: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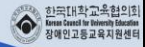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5.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2026년 기준)

구분	권역	대학명	비고
1 2 3 4 5 6 7 8 9 진로·취업 지원 유형	수도권	강남대학교	
		경민대학교	
		단국대학교	신규
		서정대학교	신규
		인천대학교	
	중부권	한국교원대학교	신규
	동남권	부산경상대학교	신규
	호남권	남부대학교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10 11 12 통합 지원 유형	수도권	한경국립대학교	
	대경권	대구대학교	
	동남권	부산대학교	
13 14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수도권	협성대학교	신규
	대경권	호산대학교	신규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6.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권역별 사업 수행대학 현황(2026년 4월 기준)

권역별 사업수행대학 현황 (2026년 4월 기준)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A)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B)
- A+B 사업 모두 진행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총 90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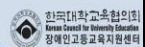
- 교육활동 지원: 1학기(54개교)
- 보조기기 지원: 대학(52교), 개인(11교)
- 대학자율 지원: 11교
- 인식개선 지원: 35교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총 14교

- 진로취업 지원 유형: 9교
- 통합 지원 유형: 3교
-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2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Tel. 02)6915-7601-6 E-mail. support1@kcue.or.kr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추진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장애학생 선별·지원체제, 교수·학습, 시설·설비, 장애학생 만족도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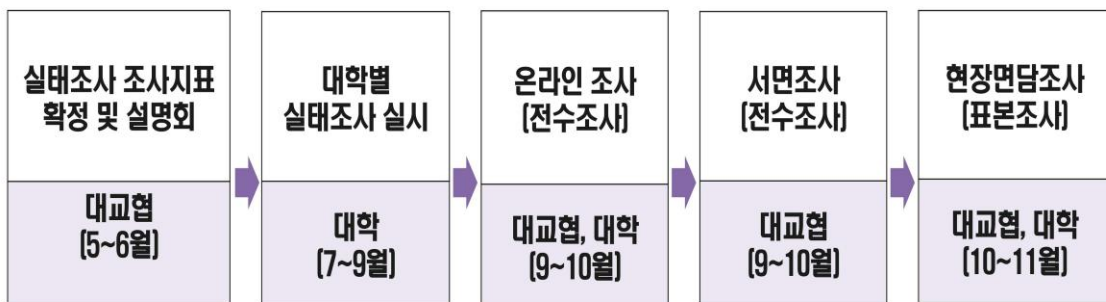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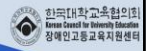
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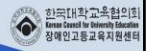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구분	학교종류	학교수(캠퍼스)	소계
일반대학	대학	183(207)	208(229)
	교육대학	10(11)	
	산업대학	2(3)	
	기술대학	1(1)	
	각종학교	2(3)	
전문대학	전문대학	129(138)	129(138)
원격대학	사이버대학(대학)	18(18)	21(21)
	사이버대학(전문대학)	2(2)	
	방송통신대학	1(1)	
합계		348(384)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구분	항목	문항 수	
		일반대학	원격대학
일반현황	1. 대학 기본 정보	9	9
	2. 장애학생 현황	3	3
	3. 장애학생 입학 현황	3	3
	4.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현황	1	1
	소계	16	16
선발·지원 체제	1.1 입시 및 선발 지원	4	4
	1.2 장애학생 지원 체제	14	14
	소계	18	18
교수·학습 지원 및 운영	2.1 교수·학습 지원 체제 및 운영	6	6
	2.2 교수·학습 지원	16	16
	2.3 진로 및 취업 지원	6	6
	소계	28	28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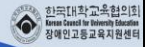
구분	항목	문항 수	
		일반대학	원격대학
시설·설비	3.1 매개시설	4	4
	3.2 내부시설	5	5
	3.3 위생시설	2	2
	3.4 안내시설	2	2
	3.5 강의실	2	2
	3.6 도서관	2	-
	3.7 강당	2	-
	3.8 식당	2	-
	3.9 학생지원시설	3	-
	3.10 기타	3	1
	소계	27	16
장애학생 만족도	4.1 선발·지원 체제	3	3
	4.2 교수·학습 지원 및 운영	9	9
	4.3 시설·설비	6	-
	소계	18	12
	합계	107	90

II.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1.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 '장애인고등교육 지원센터' 운영 추진
 - [거점대학 운영]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확대 추진'
 - ※ [23] 10교 → [24] 10교 → [25] 12교 → [26] 14교 → [27] 15교
 - [대학별 지원체계 강화]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22년 305개) 또는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장의 전문성* 강화
 - * 장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련 자격을 갖춘 자
 -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관계 교직원, 장애학생 등)를 통해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 안내자료* 제작·배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개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전문성 강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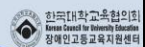
II.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1.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모델 개발,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 발굴 등 수요자 중심 교육 기회 확대
 - [대학체험·적응 지원]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지원인력·보조기기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인력·기기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개선

II.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2.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추진 계획(안)

-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정책연구 수행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장애대학생 종단연구 설계 방안 연구
-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 담당자 대상 직무연수 실시
 - 장애대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안내
- 장애대학생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장애대학생 포털 및 홈페이지 구축
 - 장애대학생 종합지원 대학 포털 구축
 - 장애대학생 종합지원 사업관리 포털 구축

II.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평가) 제2항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 감사합니다. •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과정)

02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박혜준 센터장
(서울대학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 센터장 과정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박혜준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발표순서

0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법적 의무 및 관련 법령 | 설치 및 운영

02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개요 및 관련 법령 | 구성 | 역할 | 운영 사례

03 장애에 대해 말하기

발달적 관점 | 사회문화적 관점

04 장애를 말하기

주체적 관점 | 실천적 관점





0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 센터장 과정

법적 의무 및 관련 법령

-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9명 이하인 대학의 경우 → 장애학생 지원 부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배치해야 함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물적 지원, 인적 지원 등을 적극 강구·제공해야 함
-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제3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49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기본 업무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편의 제공
-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기능 수행

▪ 대학 외부기관과의 협력

- 장애학생의 입학, 학습, 생활, 진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MOU 체결 혹은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장애인도서관,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등



02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개요 및 관련 법령

구성

역할

운영 사례



특별지원위원회 개요 및 관련 법령

-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9명 이하인 대학의 경우 → 장애학생 지원 부서로 같음할 수 있음)
- 특별지원위원회 운영절차 예시(안)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
 -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 시 회의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제3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함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특별지원위원회 역할

- ①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②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③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함
- 특별지원위원회 심의사항 예시(안)
 -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 제1호의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교육 및 서비스 등 복지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설비, 지원인력, 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사례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사례(총 11명)
 -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7명)
 - ※ 학생, 교무(학사), 입학, 시설 등의 부서 소속 교직원
 -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2명)
 - ※ 과정(학부·대학원), 전공, 성별, 장애 유형·정도 등 고려
 -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2명)
 - ※ 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지역사회 장애 관련 전문가 등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사례

▪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사례

- 외국인으로 본국에서는 등록 장애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
 - 심의를 통해 1년간 장애학생으로 등록
 - 지원(조정)안내문, 지원인력, 이동지원차량 등 지원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로 인하여 명백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명백하게 지원이 필요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심의를 통해 1년간 장애학생으로 등록
 -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조정)안내문 등 지원 제공
 - (상담센터, 교수학습센터) 심리상담, 멘토링·튜터링 등 지원 제공



※ 대학원 수료생·연구생에 대한 지원 공백 문제

03

장애에 대해 말하기

발달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우리는 장애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특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관점, 장애와 관련된 말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장애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하면, 가장 처음 듣는 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장애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 모두 공감하는 반응이 맞지만, 언제나 어렵고 힘들기만 하신가요?
 -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속에 장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 '장애학생지원센터'라는 명칭 속에 이미 장애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지원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support)'이라는 단어가 생각의 범위와 센터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 특정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지만, 장애대학생들 역시 대학생활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행위자(agency)로 바라보고, 센터를 통해 각 대학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기를 제안합니다.





The **Child Counseling & Special Children Development Lab** has redefined its research philosophy and direction under a new English name, **SPECTRUM Lab**.

SPECTRUM stands for Special Education & Translational Research for Universal Design and Inclusive Minds, reflecting the lab's core commitment to inclusive developmental research that respects the diversity and potential of all children.

The lab conducts educational and practice-oriented research on the developmental challenges and disabilities encountered across infancy, childhood, and adolescence, as well as the lived experiences of families navigating these processes. In particular, the lab is dedicated to moving beyond deficit-based models in special education by advancing research that embraces disability as diversity—recognizing disability as a natural and valuable dimension of human development.

SPECTRUM Lab also engages with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inclusive developmental environments in low-resource settings. This includes the localization of developmental assessments, the design of early intervention strategies,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ly responsive educational programs tailored to specific community needs.

Through these efforts, the lab aims to realize translational research that bridges academic theory and on-the-ground practice—creating knowledge that is both rigorous and impactful across local and global contexts.

아는 만큼 보인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 아동가족학과의 교수자로서의 관점과 시선: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전생애 발달, 부모-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관계의 상호성에 관심, 회복탄력성(Resilience), 자기이해와 성찰, 한 개인의 성장, 변화와 기여(growth, transformation & contribution)
- 질적연구자로서의 관점과 시선: 친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친숙하게 보기 위해 노력함
- 장애학연구자로서의 관점과 시선: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교차성
-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관점과 시선: 당사자성(agency), 지원과 협력

발달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장애와 장애대학생

-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 Emerging Adults
 - '장애인'이기 전에 '성인기로 진입하는 청년(Emerging Adults)'으로 바라보기
- 아넷(Arnett)의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이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 Identity Exploration (정체성 탐구): 나는 누구인가?
 - Instability (불안정성): 잦은 변화와 불안
 - Self-focus (자기 집중): 타인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기
 - 삶의 가치와 방향성: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장애와의 교차성

-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겪는 이 혼란의 시기에 '장애'라는 변수가 더해졌을 때 나타나는 양
 - 한국의 학교문화와 사회적 기대(가족의 소망) 속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의 의미
 -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 vs. 장애로 인한 의존의 필요성 간의 충돌
 - 대학 입학 전까지는 부모/교사가 주도권을 가졌으나,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
- 학생들의 까칠함이나 무기력함을 장애 특성으로만 보지 말고, 성인기로 넘어가는 성장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장애에 대해 말하는 것

-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행정의 언어 사이
- 행정의 언어: 대학 행정(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등)은 필연적으로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에 기반하여 '손상(Impairment)'을 증명하라고 요구함
- 사회적 모델(Social Model)로의 전환: 장애는 개인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수용하지 못하는 대학 환경(물리적, 제도적, 인식적 장벽)에 있음

→청각장애학생? 수어통역이 필요한 학생?



04

장애를 말하기

주체적 관점

실천적 관점



장애를 말하는 것

- Agency, Self-understanding, Self-reflection
- 1인칭의 시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힘(Agency)을 길러주어야 함
 - 나의 장애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학생 자신'
- 자기 서사(Narrative Identity)의 힘: 장애를 부끄러움이나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중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 학생이 자신의 장애 경험을 스스로 정의하고 말할(Speak)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옹호(Self-Advocacy)가 가능해짐
-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행위자로: 대신 싸워주는 것 X
 - 학생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대본'을 함께 만드는 것 O
- Micro-aggression에 대처하기
 - 강의실 내 차별적 시선에 대해 주눅 들지 않고 위트 있게 대처하는 힘 기르기



지원에서 협력으로: From Support to Coordination

-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Support)'을 넘어, 대학의 생태계를 '조율(Coordination)'하는 방향으로
 - From Support (수직적/시혜적): 결핍을 채워주는 방식 ("내가 도와줄게")
 - To Coordination (수평적/네트워크): 자원을 연결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방식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
 -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까?"
- 네트워크/협력체계 구축: 단과대학과 소속 학과, 교수학습센터, 심리상담센터, 대학의 시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업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
 - 해결사 → 코디네이터(Coordinator) & 번역가(Translator)
 - 교수에게는 학생의 언어를, 학생에게는 제도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역할



이상적이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

1. 학생을 '성장하고 있는 성인'으로 보려고 노력하기
2. 행정 편의를 위해 장애를 '대상화'하지 않도록 애쓰기
3.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로 장애를 '말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기
4. 단순 지원을 넘어 캠퍼스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기

“학생들이 센터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장애를 말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당당히 졸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특정 학생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닌 누구나 편한 모두의 캠퍼스를 지향합니다.”

“지원센터 혼자 모든 짐을 지지 마십시오. 학내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대학의 생태계를 새롭게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주세요.”



인사말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2003년부터 장애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학생처의 산하 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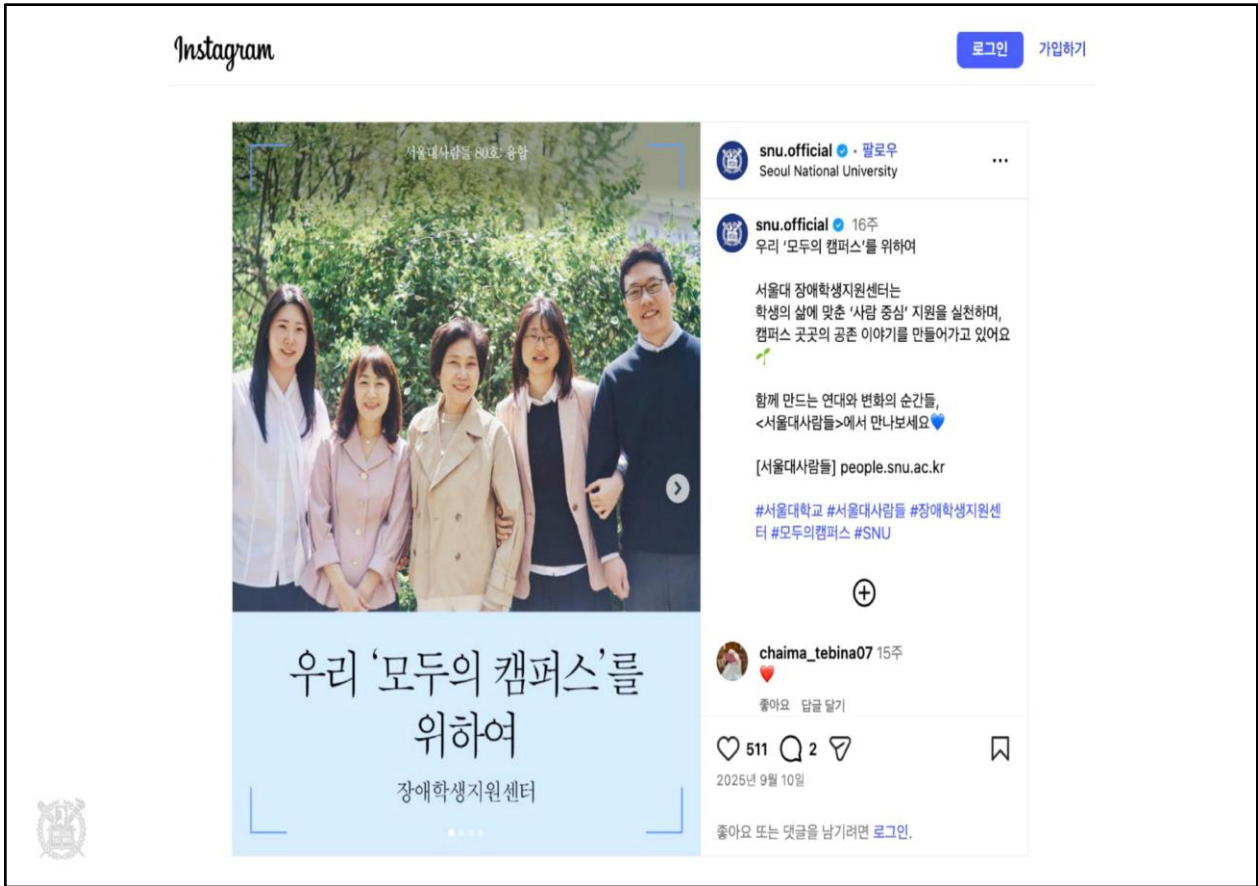
장애학생의 학업과 대학생활을 위한 물리적인 접근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이지만,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일하는 포용적인 캠퍼스 문화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모두의 캠퍼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박혜준





관계에서 시작된 변화

2024년 7월 1일부터 센터가 학생처 산하 독립 부서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박해준 교수(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가 센터장으로 부임하고, 직원이 늘었다. 유은경 담당관은 당시를 돌아보며 장애에 대한 관점이 업무를 하며 서서히 바뀌었다고 회상했다.

“장애 여부로 학생들을 구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요. 몸이 불편할 뿐, 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인식 개선’이라는 표현도 비슷해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센터 직원들은 ‘인식 개선’보다 ‘이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 다른 사람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고치려 들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는 두 가지 역할에 집중해 왔다. 하나는 장애 학생이 수업을 듣고 이동하는 등 일상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학습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직원과 학생, 구성원 전체의 이해를 넓히는 일이다. 임희진 전문위원은 학생의 개인 특성을 파악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같은 시각장애여도 저시력, 시야 협착, 전맹은 전혀 다르고, 학생마다 학습 방식이나 실습 장소가 달라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야 그 학생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죠. 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있을 때는 수업 방식에 변화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특수학교 교사 경험이 있는 류현정 직원은 마음을 여는 일이 먼저라고 말한다. 돕는다는 관점에서 특별하게 대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뜻이다.

“‘뭘 도와줄까요?’ 대신 ‘밥은 먹었어요?’ ‘요즘 연애는 해요?’ 같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며 학생의 필요를 확인하면 그에 맞는 지원은 나중에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관계에서 출발한 센터의 역할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점차 확장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임희진 전문위원은 “2007년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대학이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건 의무가 됐고, 최근에는 센터장 자격 요건이 법으로 명시되면서 조직 구조도 안정됐어요”라고 설명했다. 최명선 과장은 센터가 독립부서로 전환된 뒤 구성원들의 태도에도 또 한 번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센터 설립 초기에는 우리가 직접 요청해야 일이 진행됐고, 학생들이 먼저 기대를 낮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서관, 기숙사, 단과대 등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문의해요. 구성원들이 훨씬 적극적인 자세가 된 거죠.”

캠퍼스에 퍼지는 공존의 씨앗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사례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유은경 담당관은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대학원의 사례를 꼽았다. 병원 실습을 앞둔 장애 학생 한 사람을 위해 다수의 교직원들이 회의에 나서 실습 방식과 지원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저희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교수님들께서 논문까지 찾아보시고 실습에 필요한 방법을 조사하셨어요. 덕분에 그 학생은 친구가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실습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죠.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보람과 감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류현정 직원은 도우미 제도의 변화를 상세히 소개했다. 도우미는 장애 학생과 강의를 들으며 수업 내용을 대신 필기해 주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학생 수요에 비해 지원자가 다소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여러 학기 동안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연히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진짜 친구가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도우미 학생이 교수님께 직접 자료를 요청하고, 수업 방식에 의견을 내더군요. 의미 있는 경험을 한 도우미 학생은 다음 학기에도 다시 지원하기도 하고요.”

임희진 전문위원은 도우미 간담회에서 도우미 학생들이 역할을 확장해 가는 과정을 생생히 확인했다. 센터가 미처 짚지 못한 지점을 학생들이 짚고, 때로는 제도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사례를 보며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한다는 것이다. 교내에서 시설과 공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최근에 센터에 합류한 양윤모 직원은 캠퍼스 곳곳을 새롭게 바라보는 중이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구조물 하나하나가 장애 학생들에게는 불편이었겠다 싶었어요. 점자 블록, 엘리베이터 폭, 바닥 면의 재질 같은 요소들을 보며 그간 조용히 조정하고 바꾸어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가능하게 되고요. 저 역시 개선해야 할 점들을 더 열심히 찾아보게 됩니다.” 시선이 깊어지며 그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 것은 양윤모 직원만이 아니다. 최명선 과장은 주변에 장애 학생이 있으면 대부분 망설이지 않고 움직인다고 말한다. 장애 학생이라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당연한 마음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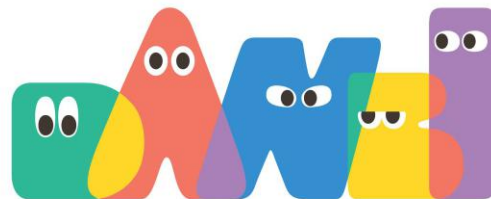
직원들의 말처럼, 장애 학생 지원은 센터만의 역할이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다 같이 뿌린 공존의 씨앗은 오늘도 ‘모두의 캠퍼스’를 싹틔우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함께할 때 더 빛나는 우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02-880-8786, 8787
snudanbi@snu.ac.kr



snudanbi.snu.ac.kr



03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사례

김태준 센터장
(한경국립대학교)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사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중심]



목 차

- 1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알아야 할 장애 관련 기본 이해
 - ❖ 장애 정의
 - ❖ 장애학생 개념
 - ❖ 인권과 권리, 그리고 정체성
 - ❖ 교육받을 권리
 - ❖ 차별
 - ❖ 장애대학생 현실
 - ❖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 법
- 2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매뉴얼 살펴보기
 - ❖ 학칙 및 관련 규정 마련
 - ❖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
 - ❖ 장애학생지원센터 역할 및 개인별 지원계획 개요
- 3 기타
 - ❖ 학칙 장애인 지원 관련 기관 안내
 - ❖ 장애학생 주요 차별 사례
 - ❖ 한경국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
 - ❖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1.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알아야 할 장애 관련 기본 이해

3/43

장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부정적 의미

부족, 방해, 고장 등을 의미

■ 복지 및 의학적 의미

신체적·정신적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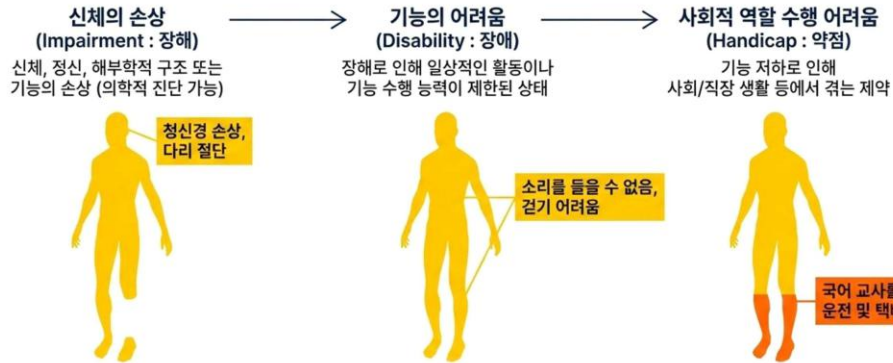
■ 장애인 법적 정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4/43

장애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제약'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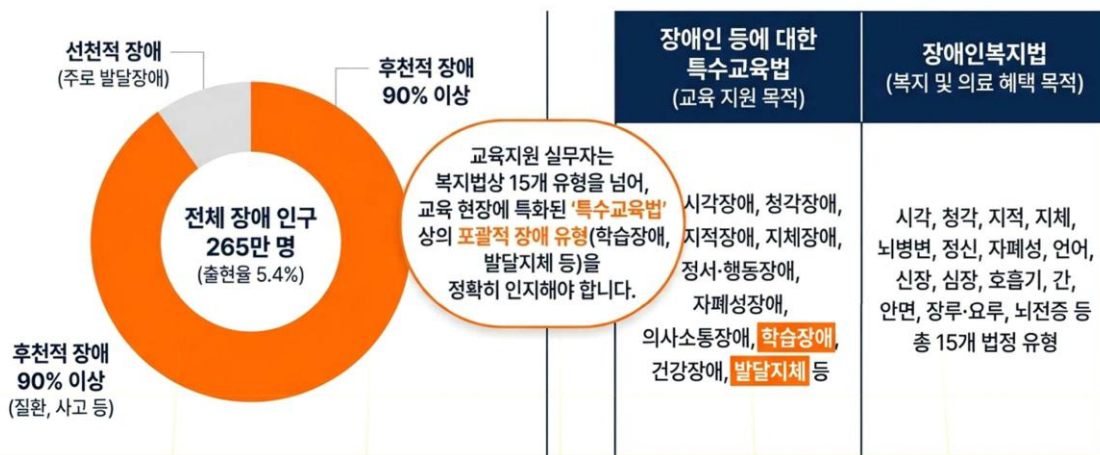
WHO 국제장애분류(ICIDH)의 장애 3단계 개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법적 정의 역시 단순한 의학적 손상을 넘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에 핵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43

지원목적에 따라 법적 범주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6/43

장애학생,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개념 알기

장애학생 ≠ 장애인 ≠ 특수교육대상자



7/43

인권과 권리 그리고 정체성

**어떤 조건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

태어나자마자 온전히 주어지는,
나의 정체성을 보호받는
강력한 울타리

나이 성별 종교 피부색
장애유무 경제적 여건

**나를 만드는
고유한 특성의 총합**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신념, 특징, 외모, 내면 등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

(변화하지 않는 정체성)
부모 성별 가족 국적 고향 피부색

(변하는 정체성)
종교 지역 직업 소득 나이 신체

8/43

법의 약속과 차별

완벽하게 보장된 학습권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보호되며, 교육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이유 없는 불리함, 차별

나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인해 합당한 이유 없이 집단 내에서 불리함을 겪게 되는 현상.



장애대학생이 마주하는 현실 - 우리의 사고 전환이 필요

온정적 시혜의 대상

무시, 거부, 배제
'장애'라는 정체성이 차별의
이유가 된 대학 사회의 민낯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

동등한 학습권 보장
고유한 정체성의
온전한 보호 및 존중

**장애는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기



모두를 위한 캠퍼스, 법으로 짓다

장애대학생 지원 관련 핵심 법령 및 차별 예방 실무 가이드

11/43

장애대학생 지원을 규정하는 핵심 2가지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권 보장 및 지원 체계 구축 (시스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맞춤형 편의 제공

학칙 내 장애학생 지원 규정 명시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 행위 금지 및 권리 구제 (환경)

교육활동, 이동, 의사소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강제규정)

재화·용역 제공 시 차별 금지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배치 의무

특수교육법이 '캠퍼스 내 지원 시스템'을 만든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없는 환경'을 강제합니다.

12/43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차별 유형



직접 차별

형식적, 논리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예: 입학 거부, 수강 및 수업 거부, 통학버스 승차 거부

간접 차별



형식상 공평해 보이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아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행위

→ 예: 지체/시각 장애학생에게 동일한 시험 시간 부여, 접근 불가능한 학사 시스템 강제, 예외 없는 출석 규정 적용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학습과 생활에 필수적인 지원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예: 대체자료(점역, 확대, 수어 등) 제공 거부, 보조기기 지원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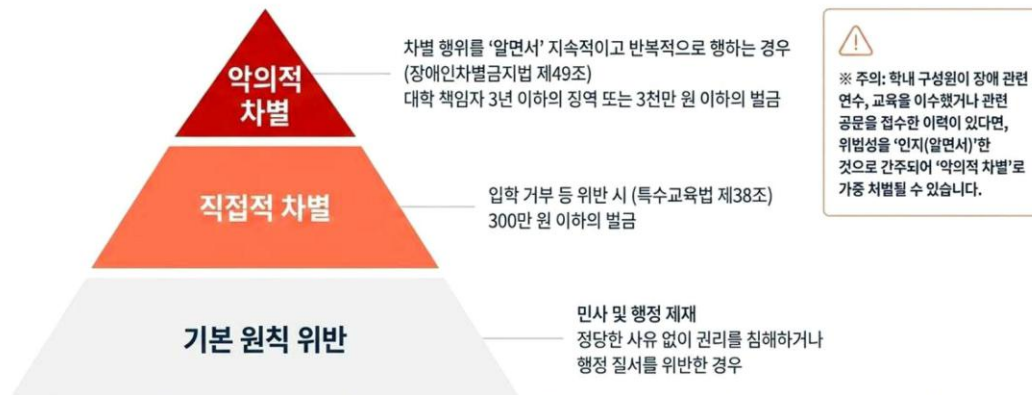


장애를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예: 수업 시간 또는 공공행사 중 장애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언급하는 행위

13/43

장애대학생 차별행위의 심각성에 따른 법적 제재



14/43



2.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매뉴얼 살펴보기

15/43

대학 장애학생 지원 학칙 및 규정 : 4대 핵심 영역

장애학생지원센터 역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학칙 등 반영 의무)



학습 지원

핵심 규정: 우선 수강신청 및 지원, 교육지원인력 배정,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
적용 예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필, 정역, 확대 등 맞춤형 지원 제공. 부득이한 사유(질병 등)로 정기시험 결시 시 추가시험 응시 기회 부여.



입학 전형

핵심 규정: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 지원
적용 예시: 장애를 이유로 입학 배제 금지조항 및 입학시험 시간 연장 등을 별도로 규정



정보 접근

핵심 규정: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적용 예시: 영상물 자막 제공 및 편의 지원, 맞춤형 수업 자료 사전 제공.



편의 및 기타

핵심 규정: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환경 및 생활 지원
적용 예시: 낮낮이 책상, 보청기 수신 시스템 구비. 장애학생에게는 재학연한과 휴학 횟수 제한을 예외적으로 두지 않음.

16/43

한경국립대학교의 학칙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칙 예시

제2절 입학과 등록

제36조(입학정원)

- ③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원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수업 및 성적평가

제60조(시험)

- ③ 병역,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⑥ 장애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절 장애학생인정 및 지원

제83조(인정 및 적용)

- ① 장애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이하 “장애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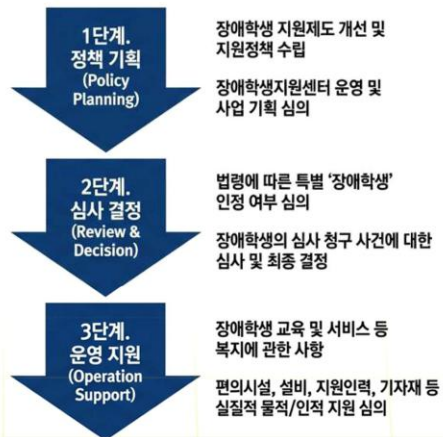
제84조(지원)

- ① 제3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재학연한과 휴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②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교육개발원과 장애인고등교육위원회를 두며,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7/43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기준 및 핵심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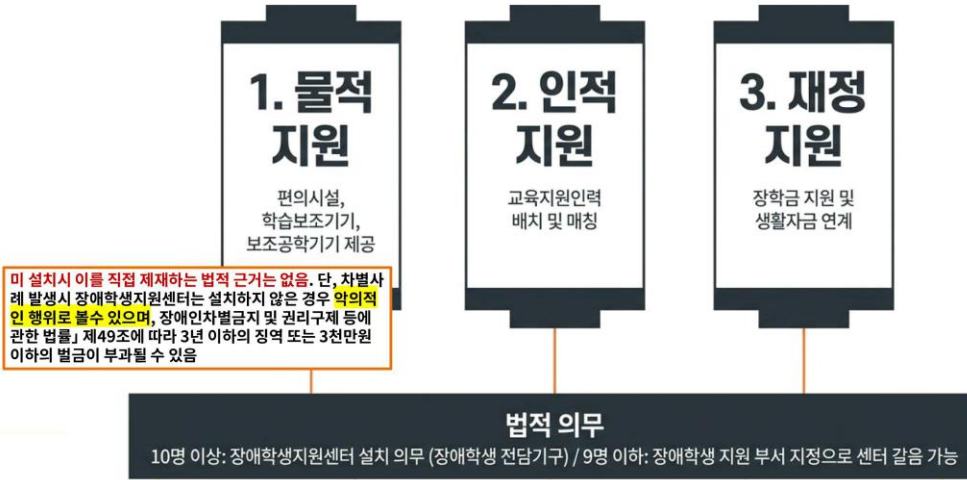
센터 설치 기준 및 역할



1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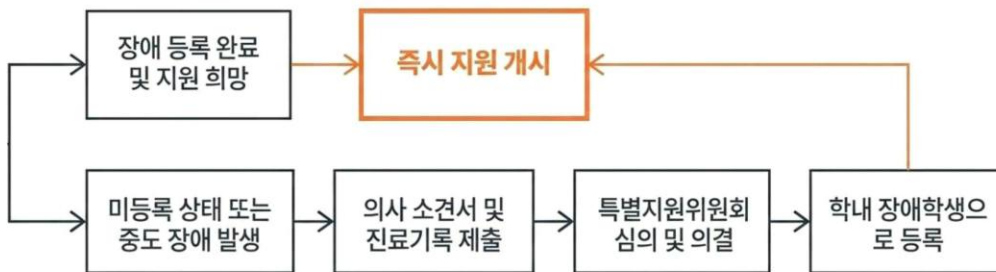
장애학생지원센터 역할 및 설치 의무

센터 역할 및 미 설치 시 문제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대학생은 절차를 거쳐 지원합니다.

장애대학생 지원 절차



*명확한 진단 내용이나 증빙 자료 없이 지원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사전 안내

핵심중의 핵심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운영 절차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절차



시스템을 꼭 구축하세요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요 조사 및 관리 시스템



장애대학생 영역별 지원 내용

영역별 지원 내용



학습지원 (Learning Support)

강의 접근성:
실시간 문자 또는 수어·점역 통역 제공

평가 및 수업 보조:
강의/평가 대필, 화면 해설 제공

실험·실습 보조:
지체장애(실험 보조), 시각장애(대체자료 제작) 등 맞춤형 동반 참여

도서관 서비스:
자료 수집 및 열람 전반 지원



편의지원 (Convenience Support)

이동권 보장:
수업 간 이동, 기숙사 및 기타 교내 시설 이동 지원

일상생활 보조:
물품 정리, 식사 등 캠퍼스 생활 필수 활동 보조

참여권 보장:
학내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지원

23/43

교육지원 인력 운영 및 연계과정

교육지원인력 의무 및 권리

의무

- 사전 교육,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필수 참석
- 활동 보고서(일지)를 사실에 기반하여 성실히 작성
- 결강/불참 시 대체 인력 투입을 위해 2~3일 전 센터 및 학생에게 사전 통보

권리

- 학습 및 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 개선 건의
- 사전 협의되지 않은 과도한 지원 요구에 대한 거부권 행사
- 갈등 발생 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중재 요청 가능

연계 과정

수요조사
위원회 심의/선발
인력 모집
(국가근로장학금, 대학 예산 활용)
매칭 및 장애 이해 교육 실시

24/43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다양한 역할 알아보기



행정 및 복지 (Admin & Welfare)

- 관련 부서 내 장애학생 전담 직원 지정
- 안내 리플렛의 점자/확대/파일본 상시 구비
- 학사 공지 등 중요 정보를 문자, 이메일로 수시 우선 제공



장학금 지원 (Scholarships)

- 장학금 수혜대상 일정 비율 할당제 및 특별 장학금 운영
- 교내·외 장학금 정보 상시 제공 및 신청 조력
- 장애학생 맞춤형 교내 직무 발굴 및 근로장학생 우선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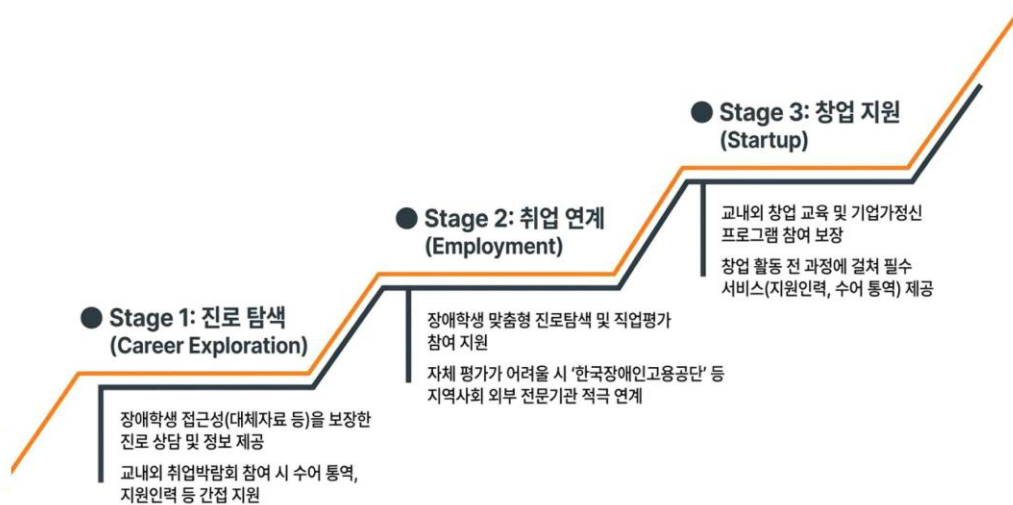


안전 관리 (Safety & Awareness)

- 종합안전매뉴얼 내 '응급상황 시 장애인 대피지원 방안' 의무 삽입
- 계단이송용 들것 비치 및 활용 교육 실시
- 지원인력 대상 심폐소생술 및 안전 대피 교육 정례화

25/43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다양한 역할 알아보기



26/43

장애대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 및 관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연결된 캠퍼스'를 완성합니다.**

1. 철저한 맞춤형 설계

학생의 요구에 기반한 7단계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엄격 준수

2. 권리와 의무의 균형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체계적 매칭을 통한 건강한
지원 생태계 구축

3. 전주기적 통합 케어

입학부터 대학 생활, 안전 확보,
그리고 사회 진출(취·창업)까지
끊김 없는 지원



상세 지원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확인

27/43



3. 기타

28/43

장애대학생 지원 관련 기관 알아보기

구분		비고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대학알리미, 대입지원포털, 복지실태조사 등 자료 제공	
	장애대학생 정보제공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확인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자료 탑재	
	중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담당자 연락처 등 탑재	
고용노동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우대공고, 장애대학생 알림게시판 등	
	장애인 취업지원포털	각종 취업관련 정보 제공	
	근로자 지원	보조기기 지원	지역별 지원서비스 연결 가능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 고용포털	채용정보, 취업가이드 등 제공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직업능력평가, 직업심리검사, 출퇴근비용지원 서비스 확인 가능	
	고용개발원 사이버연수원	장애인고용 전문인력을 위한 온라인교육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기초능력평가, 각종 교육자료, 장애인구직정보 등 자료 수록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지원포털 K-startup	창업지원사업 안내, 창업 길라잡이, 스타트업라운지 등 창업정보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창업지원, 판로 및 기술지원 등 장애인창업 정보 제공	
기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교재 점자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 지원 등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출력 등 자료 제작, 오디오북 등 서비스 제공	

29/43

장애대학생 주요 차별 사례

- 장애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에서 **점수조작·특별전형 불공정 운영**
- 대입전형에 자폐성 장애 학생 배제
- 강의 도중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김○○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있다."**라고 한 뒤 학생들에게 박수를 치도록 한 대학교수의 장애학생 비하 발언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교재의 점자 번역이나 텍스트 파일 제공 요청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
- 시각장애 학생이 중간고사에서 시험시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비장애 학생들과의 '공정성'을 이유로 장애 학생의 필수적인 **시험 시간 연장 요청 거부**
- 교수가 "장애 학생은 내 수업(실습 등)을 **따라오기 힘들 테니 다른 과목을 들으라**"며 수강 철학을 중용하는 등 학습 기회를 원천 차단
-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MT, 동아리 모임, 조별 과제 회의를 진행**
- 온라인 강의(LMS) 시 청각장애 학생에게 필수적인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음**
- 특정 학과(간호학과 등) 모집 요강에 **'신체적 결함이 없는 자' 또는 '특정 질환 및 장애가 없는 자'**를 명시

30/43

한경국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현황

■ 센터 개요

구분	내용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지원센터(센터장 : 교육연구관) - 기획운영팀(팀장 : 교육연구사), 교육지원팀(팀장 : 교육연구사) ◦ 인력 - 학습지원사 25명, 활동지원사 5명, 상담사 1명 ◦ 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평택캠퍼스, 안성캠퍼스 	
주요 업무	교수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학습 및 생활 지원 ◦ 장애학생 학습자료 제작 및 원격 교육 ◦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 운영 ◦ 특별지원(자문)위원회 운영 ◦ 국가근로장학사업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운영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상담 관리 ◦ 보조기기 관리·운영 ◦ 장애대학생 간담회 운영
	장애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운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라이프 밸류 업' 프로그램 운영 ◦ 전국 장애, 비장애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운영
	장애인기업가 역량강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기업가 역량강화센터 운영(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 사업)

31/43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더 거침없이, 더 지혜롭게, 더 존중하라'
장애인 고등교육 및 취창업을 위해
국가교육부가 유일하게 설립한 장애인 특성화 국립대학

☐ 물리적 자원 측면(시설, 건물 측면)

1 장애인 교육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구축

☐ 모든 건물과 시설 배리어프리 인증

- (배리어프리 100% 대학) 교육장(평택, 수원) 내 모든 건물과 시설(강의실, 식당, 화장실 등)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 되어 모든 장애유형 및 정도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



32/43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 장애 유형별 다양한 보조기기 구비(약 200개)

-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청각(알람시계, AI 속기), 시각(점자정보단말기, 확대경), 지체(수동-전동 휠체어)등 장애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 대여 가능



□ 원거리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 보유

- (배리어프리 기숙사 보유) 원거리 장애인 연수생을 위한 배리어프리 기숙사 보유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2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편의 시설 구비

□ 장애인 교육생 이동 및 편의 시설 구비

- (장애인용 차량 구비) 휠체어 탑승용 대형 버스 3대, 휠체어 탑승 카니발 차량 1대 운영
- (휠체어 스테이션 운영) 각종 수동-전동 휠체어 대여, 수리 시설, 급속 충전기 운영



□ 차별없는 이동을 위한 무장애 캠퍼스

- (교육장 정보 제공) 교육장(영택, 수원) 사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VR 캠퍼스 운영 및 무장애 캠퍼스 지도 제공
- (무장애 이동로 보유) 비가림막 이동로, 휠체어 통행 가능 복도 및 통로, 복도별 손잡이 설치, 점자 안내표지판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② 장애인 지원 조직 및 인적 자원 측면

1 우리나라 대학 유일의 장애인 교육 지원 전담 조직 구축·운영

통합교육지원본부


장애학생지원센터(27명)	통합교육지원과(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학습 지원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운영 장애학생 생활 지원 담당 전문인력 (2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취·창업 운영 장애학생 입시 운영 담당 전문인력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 전공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 학습지원사 2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 전공 교육연구사 1명, 과장 1명, 학습지원사 2명, 장애인 취업 담당관 2명, 사무원 1명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③ 장애인 취·창업 네트워크 측면





1 장애인 취·창업 연계 및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기관 현황

□ 청년 장애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MOU 체결(10개 지역거점 국립대학, 2개 기관)

청년장애인 창업공유대학 지역거점 국립대학 업무협약서 (2023년 ~ 계속)	MOU 대학 및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경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전남대학교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과 MOU 체결(4개)

<p>POSCO 휴먼스 장애학생 인적교류 확대(현장견학 등) (2022년 ~ 계속)</p> 	<p>신한은행 우수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서 (2024년 ~ 계속)</p> 
<p>삼성SDS(오픈헨츠) 고등교육 기반 장애인 일자리 마련 (2024년 ~ 계속)</p> 	<p>LG U+(위드유) 사회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공동양성 (2017년 ~ 계속)</p> 

37/43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④ 장애인 취창업 사업 수행 및 운영 측면

1 장애학생 취·창업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업	대상	성과	비고
전국 장애·비장애 창업경진대회	장애·비장애 대학생	20팀 100명 참가	운영 예산 2억 매년 1~2월
전국 장애학생 취업 캠프 및 채용설명회	장애 대학생	200명 참가	운영 예산 매년 8월
장애학생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진로융합 프로젝트 오마이잡	장애 청소년	2,000명 참가	운영 예산 1억 매년 10월
전국 장애 청소년 비즈쿨 캠프		300명 참가	운영 예산 매년 7~8월



38/43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2 전국 유일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운영

(24년 기준)

설립	인력	운영 프로그램	수강생	예산	주요 프로그램
23년 3월	3명	50개	1,550명	3억	- (발달장애) 셀프성장 메이킹 - (청각장애) 나무에 그리는 인두화 - (시각장애) 마음의 소리 음악극 - (뇌병변장애) 보치아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3 장애인기업가 역량강화센터 운영

- (주관) 중소기업벤처부 (재)장애인기업지원종합센터
- (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 운영 내용

예비 창업자 창업 특화 교육	1 소상공인 특화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스마트 팜 팩토리 ○ 안마원 창업 ○ AI 기반 데이터 라벨링 창업교육
기 창업자 AI 교육 및 컨설팅	2 스타트업 창업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전자 상거래 창업교육 ○ AI 기반 로봇 상생 카페 창업교육 3 AI 경영혁신 교육 4 맞춤형 컨설팅 바우처 프로그램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장애인식개선행사(장애이해콘서트)

장애인식개선행사(장애 체험)



활동지원사 연수

장애학생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참여

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 관련 주요 내용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지원 프로그램(2박3일 여행)- 전주, 군산 여행

감사합니다.



한경국립대학교



43/43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애학생 편의 제공

조한나 계장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2026.4.30(목)
나사렛대학교 조한나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편의제공

개요

-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대학에서 장애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 받지 않고 원하는 학습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 따라
-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 공학 기기 등의 물적 지원
 -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 3) 취학 편의
 - 4) 정보접근지원 등의 수단을 제공 함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근거와 의무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장 고등교육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교수학습지원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지원

교육지원
인력지원

생활지원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진로 및 취·창업지원

장애학생 편의 제공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
 3. 취학편의지원
 4. 정보접근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설치 지원
 6. 그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교육지원인력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학생 편의 제공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 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대학의 장은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수험편의제공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통역
속기통역

대체자료

교수-학습지원

장애학생 영역별 지원

▪ 장애학생 우선 신청 제도 마련

- : 유관부서와의 협력 필요
- : 교육지원인력 동일 과목 수강 허용

▪ 교재 파일 제공(대체자료 지원)

- : 스크린리더, 교재원본텍스트(txt)
- : 국립장애인도서관 디지털 음성도서(DAISY) 이용

▪ 강의노트 파일 제공

수강신청지원

강의 교재 및 보충학습
자료 지원

교강사 대상
장애학생 학습 지원에 대한 안내

수업 지원 안내 공문, 안내문 가이드북 송부

안내문(예시)

Korea Nazarene University support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2026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안내문

[장애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따라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장애학생 학습 지원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면강의 학습지원

Korea Nazarene University support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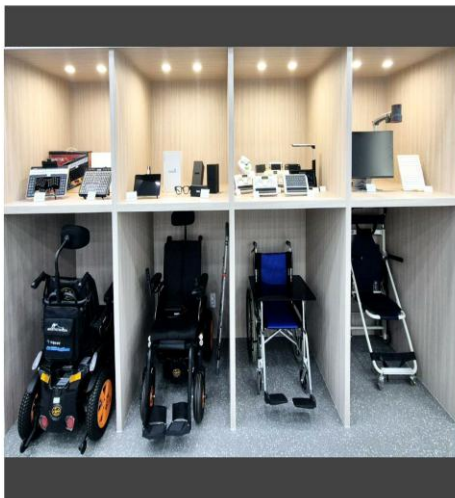
- 1 교재 강의 및 노트파일 제공
- 2 판서 대신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제작·활용 및 파일 제공 (청각장애학생)
- 3 장애학생 과제제출 시간 연장
- 4 시험시간 1.5배 ~ 2배 연장 (구술 평가 및 리포트 제출 대체 등 시험 방식 채택)
- 5 강의 내용 녹음 허용
- 6 수업 중 노트북 사용 허용
- 7 장애학생 수강 좌석 우선 지정
- 8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서술식·논술식 설명 (도형·도표 사용 지양)
- 9 기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업 계획서 등록 시 표기한 사항 등)
- 10 수강장애학생 상담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비대면강의 학습지원

Korea Nazarene University support center for student with disabilities

- 1 강의영상 파일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가능한 강의 스크립트 파일(.hwp .txt)로 제공
- 2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동영상 내 강이자 얼굴 영상 삽입 (강이자 입 모양이 보이는 크기)
- 3 실시간 강의 시 장애학생 상담 후 참여 배려 제공 (비대면 시 지원인력 100% 제공 어려움)
- 4 실시간 강의 시 지원인력을 위해 링크 주소 nCyber에 게시
- 5 장애학생 동영상 시청 시간 1주 이상 보장 (출석체크 및 퀴즈 적용 시 반드시 배려)
- 6 장애학생 과제 제출 시간 연장
- 7 시험시간 1.5배~2배 연장 필요시 난이도 조정 및 과제 대체 (교내 이러닝 강좌 포함)
- 8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그림, 도표 등에 대한 상세 설명 (대명사 사용 지양)
- 9 영상 크기를 분할하여 제작 및 탑재 (1개의 영상 당 30분 이내 권장)
- 10 수강장애학생 상담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교수-학습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지원



기자재 점검 및 관리

이동보조기기 안전교육

※ 지역사회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운영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확대경(퍼블HD, 캔디5, 플로워웍스), 점자라벨프린터(식스닷), 점자프린터,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센스리더), 속기키보드(자바포스, CAS) 문자발생기(소보로), 무소음키보드, 노트북, 컴퓨터, 전동 기립기
씨사운드태블릿PC(의사소통 및 학습용), 전동휠체어, 휠체어, 흰 지팡이 등

교수-학습지원

강의 대필

과제 지원, 발표 지원, 계절학기 지원, 튜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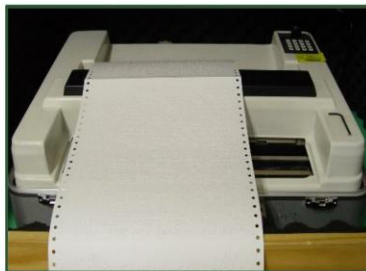


평가(각종 고사)지원

평가실 제공, 대필 지원, 기자재 지원, 시간 연장

수어통역

청각장애학생 대상 수어통역



대체자료지원

점자-전자도서 제작, 확대 복사, 점자 인쇄물 제공

속기(문자)통역

청각장애학생 대상 속기 및 문자 통역 지원



장애학생 수업지도 방안교육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방법 교재 배포

대학생활지원

장애학생 영역별 지원

생활 및 이동보조

시각·지체장애학생 교내 이동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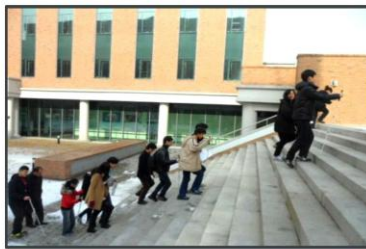


이동 기자재 점검 및 수리

전동·수동 휠체어 정기 점검 및 수리

보행안전교육

보행교육(시각), 휠체어 안전교육(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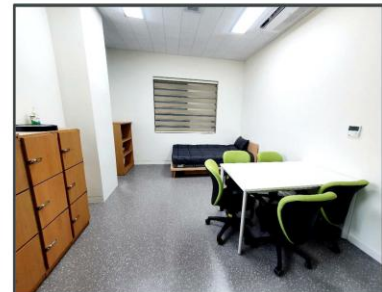


대학주변 편의시설 점자지도 제작 배포

학교 주변 식당 및 편의시설 점자 안내지도 제작

편의시설모니터링

장애학생(당사자), 모니터링원 선발 및 운영



휴게공간지원

남·여 장애학생 휴게공간 지원

대학생활지원

장애학생 영역별 지원

수어·점자교육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중급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력 교육

장애이해 지원인력교육 지원인력간담회




취업역량강화교육

사회성훈련 프로그램, 자기이해 프로그램, 진로상담 프로그램, 취업캠프, 취업지원멘토링,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등 운영

대학생활지원

장애학생 영역별 지원

장애학생 예비대학

신·입학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장애학생 행사지원

장애인의 날, 총장 간담회, 학생 축제 등






대내·외 장학금 지원


복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취업연계형) 등

- 생활관 이용 지원
- 행정부서 이용 지원
- 편의·복지시설 이용 지원
- 웹/앱 접근성 지원
- 안전 및 기타 지원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장애학생 영역별 지원

-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이해프로그램 시행
- 장애학생 지도교수 교육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소개



진로 및 취·창업지원

장애학생 영역별 지원

- ❖ 재할·복지분야 최우수대학의 위상에 걸맞은 장애인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구축
- ❖ 장애유형·적성·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실시
- ❖ 개별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한 학업·취업 경쟁력 강화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현장실습



취업 후 적응 지도

장애학생교육지원체계

장애학생
고용
네트워크
사업

지역사회 장애인고용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취창업지원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연계



- 장애학생 자립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장애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자료교환 등 상호교류
- 장애학생 지원 관련 사업의 공동참여
- 교육훈련, 전문인력양성, 현장실습, 인턴십 제공 등
- 장비, 시설 등 물적자원의 상호이용 및 제공
- 기타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고용네트워크 협약 및 간담회

감사합니다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 연수 만족도 조사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과정)

QR코드를 스캔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과정)

인	쇄	2026년 4월
발	행	2026년 4월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	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대성디폴리스 A-23층
전	화	02-6919-3800
홈	페이지	www.kcue.or.kr
인	쇄	처 경성문화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비매품>

※ 이 자료집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과정)



| 주최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주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비매품/무료

93370

9 791166 965500

ISBN 979-11-6696-550-0